

「평창군 사회복지센터 설치 및 관리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22년 10월 20일, 평창군수 제출
- 회부일자 : 2022년 11월 3일 회부
- 상정일자 : 제280회 평창군의회(임시회) 제1차 조례규칙심사특별위원회
(2022년 11월 13일 상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복지정책과장 신미진)

가. 제안이유

평창군민들에게 종합적인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평창군 사회복지센터를 설치하고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나.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규정(안 제1조)
- 평창군 사회복지센터 정의(안 제2조)
- 평창군 사회복지센터 설치 및 위치(안 제3조)
- 시설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제12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 김영옥)

○ 본 조례안은

평창군민들에게 종합적인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평창군 사회복지센터를 설치하고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서는 센터의 입주자격을 규정한 것으로

노인·장애인·청소년 복지법에 따른 비영리법인으로 규정하며

안 제5조부터 제7조까지는 입주자의 의무

안 제8조에서는 사용제한 및 입주취소

안 제9조부터 제10조까지는 유지·보수 및 관리에 관하여 각각
규정하였습니다.

○ 검토결과, 본 조례안은

군 사회복지센터 설치 및 관리 근거 마련을 통해

관내 사회복지 단체의 활동 기반을 조성하고자 하는 취지로

제정에 따른 상위법 위반 등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됩니다.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의결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붙임】 평창군 사회복지센터 설치 및 관리 조례안 1부.

평창군 사회복지센터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창군민들에게 종합적인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평창군 사회복지센터를 설치하고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사회복지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란 종합적인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공급하는 시설물을 말한다.
2. “입주자”라 함은 제5조에 따라 사용·수익 허가받은 법인·단체를 말한다.

제3조(센터 설치 및 위치) ① 군수는 평창군민들에서 종합적인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평창군 사회복지센터를 설치한다.

② 센터의 위치는 평창군 평창읍 중부로 61에 둔다.

제4조(사용·수익 등) ① 센터에 입주를 희망하는 자는 센터 총괄부서와 협의한 후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으면 센터의 공간적 부분, 제4조에 따른 입주 자격 등을 종합 판단하여 입주 여부를 결정하여 「평창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25조에 따라 공유재산 사용을 허가한다.

③ 센터의 입주자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를 영위하는 평창군(이하“군”이라 한다.)에 소재한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비

영리민간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으로 하되, 군 소관부서와 협의가 되어야 한다.

1.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가.
가. 「노인복지법」 제38조에 따른 사업
나.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사업
다. 「청소년복지지원법」 제29조에 따른 사업
라. 그 밖에 평창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복지사업
2.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에 따른 사회복지협의회
3.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19조에 따른 자원봉사센터
4. 「법률구조법」 제8조에 따른 법률구조공단
5.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8조 및 제18조2에 따른 법인
6. 「평창군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제22조에 따른 평창군사회적경제지원센터
7.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1조에 따른 평창군 지역사회보장 협의체
8.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에 따른 평창군 어린이급식지원관리센터

제5조(사용료 등) ① 입주자는 「평창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라 사용료

를 군수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공유재산 관련 법령 등 무상사용 규정이 있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의 납부기간·납부방법 및 연체요율 등 필요한 사항은 「평창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6조(입주자의 의무) ① 입주자는 선량한 사용자로서 센터의 시설물을 유지 관리하고 공공의 질서에 위배되지 않아야 하며, 공유재산 사용·수익 허가에 따른 사항을 지켜야 한다.

② 입주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1. 사용 승인된 권리를 다른 자에게 양도 또는 대여하는 행위
2. 시설물을 개축·증축 또는 변경하거나 본래의 용도가 아닌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3. 시설물을 파손하거나 멸실하거나 유지관리를 저해하는 행위

③ 입주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을 훼손하는 경우에는 원상복구를 하거나 그 손해에 해당하는 금액을 변상해야 한다.

제7조(입주자의 책무) ① 입주자는 본 조례에 따라 선량한 입주자로서의 소임을 다하여야 하며, 센터 총괄부서의 조정 통제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8조(사용제한 및 입주취소 등) ① 입주자가 더 이상 사용·수익을 원하지 않을 경우는 군수에게 알려야 한다.

② 군수는 입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수익 허가를 해지할 수 있다.

1. 제4조에 따른 입주 자격을 상실한 경우

2. 제7조에 따른 입주자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이 조례에서 정하는 사항이나 군수의 지시를 위반하였을 때

4.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시설사용이 불가능할 때

제9조(유지 및 보수) ① 군수는 센터의 시설 및 관리를 위하여 개보수 등을 하여야 한다. 다만, 입주자가 고의로 오염, 파손, 멸실한 경우에는 입주자로 하여금 보수하게 하거나 입주자의 비용부담으로 군수가 보수할 수 있다.

제10조(관리 및 운영) ① 군수는 시설물의 안전을 위하여 「화재로 인한 재해 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라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가입하고 군이 부담한 보험료나 공제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입주자에게 부과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리사무소 및 별도의 인력을 배치할 수 있다.

제11조(준용)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평창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 이 조례 시행 전에 입주한 입주자에 대해서는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